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25호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로봇 지원 사업 공고

도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 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로봇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2. 14.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도내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로봇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
- □ 지원유형별 개요
 - (유형1) 스마트공장 '기초' 구축 (도 내 22개 시·군 대상)

지원	지원조건										
지운	지원유형 지원대상				최대 지원금액		지원비율		지원규모	지원규모 및 기간	
경기도 <u>22개 시</u> (유형1) 중소 제조기압 기초 ('23~'24년 '유형 수혜기업 지원 불			업 1~4 '			l	사업비의 % 이내	최대 (협약일회	122개 기업(과제) / 최대 7개월 (협약일로부터 '25년 11월 30일까지)		
227	내 시·군	ŀ별 ㅈ	원 목표								
No.	시·	군	목표(개사)	No.	시·군	목표	(개사)	No.	시·군	목표(개사)	
1	화 <i>-</i>	성	31	10	김포		3	19	의왕	1	
2	안.	산	18	11	포천		2	20	오산	1	
3	시흥		16	12	안양		2	21	동두천	1	
4	파	주	11	13	여주	2		22	구리	1	
5	남양주 7		7	14	의정부	1		※ 광격	^두 (6), 양주(2)	, 연천(1)은	
6	이천		7	15	부천	1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7	용인		5	16	평택	1 1		위해 검토 중이며, 해당 시·군의 지원 희망			
8	안-	성	5	17	하남	1		기업은 [붙임1, 별지8] 의 수요조사서 제출 요망			
9	수-	원	4	18	광명	1				출 요망	

지원내용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기초' 단계 구축을 위한 설비 및 솔루션				
구분	세부 지원내용				
설비	스마트공장과 연결되는 자동화 장비 및 제어기, 센서, 비전 시스템 등 지원 ※ 단, 자동화 장비는 생산 데이터가 생성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동이 필수				
솔루션	 제품 설계 개선,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소프트웨어 지원 ※ (예) 생산공정관리시스템(POP/MES), 제품수명주기관리시스템(PL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 (유형2) 특수목적 스마트공장 및 로봇기반 디지털제조 (도 전체 대상)

- (유형2-1) 특수목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대상 최대 지원금액 지원비율 지원규모 및			지원규모 및 기간	
	경기도 내			5개 기업(과제) /	
(유형2-1)	중소·중견 제조기업	8천만원	총 사업비의	최대 7개월	
특수목적	('23~'24년 '유형3,4'	(도100%)	70% 이내	(협약일로부터 '25년	
	수혜기업 지원 불가)			11월 30일까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솔루션 구축, 제조데이터 활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안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설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지원				
	•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절감을 돕는 공장 관리 시스템(FEMS) 도입				
에너지·	지원, 전력량계·유량계 등의 계측 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정 개선을				
탄소중립	위한 제어 시스템(센서, 에너지 절감 알고리즘, 액추에이터, 제어 장비 등)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지원				
보안	• 스마트공장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서비스 구축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제조데이터	•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분석하여 공정을 최적화할				
활용	수 있도록 첨단기술(인	!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CPS 등) 도입 지원	

- (유형2-2) 로봇기반 디지털제조

TI 01 T 71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대상	최대 지원금액	지원비율	지원규모 및 기간		
(유형2-2) 로봇기반 디지털제조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	3천만원 (도100%)	총 사업비의 70% 이내	15개 기업(과제) / 최대 7개월 (협약일로부터 '25년 11월 30일까지)		
지원내용	: 제조 현장에 필요한 제	조·물류·안전 로봇	롯 등 신규도입	및 유지보수		
구분		세부 지원내용				
로봇	 제조로봇 예 : 이적재용 리용, 바이오 공정용, 시 물류로봇 예 : AGV(Aut 팔레타이징(Palletizing) 를 안전로봇 예 : 위험작업 웨어러블 로봇 등 (주변설비) 로봇 도입과 (유지보수) 제조 현장의 ※ 단, 신규도입 로봇은 	세부 지원내용 • (로봇도입) 제조 현장에 필요한 제조·물류·안전 로봇 등 신규도입 지원 - 제조로봇 예 : 이적재용, 공작물 탈착용, 용접용, 조립 및 분해용, 가공 및 표면처 리용, 바이오 공정용, 시험 검사용 로봇 등 - 물류로봇 예 : AGV(Automated Guided Vehicle), AMR(Autonomous Mobile Robot), 팔레타이징(Palletizing) 로봇, 컨베이어 연계형 로봇, 협동로봇 기반 물류 로봇 등 - 안전로봇 예 : 위험작업용 원격조작 로봇, 지능형 안전 감시 로봇, 작업자 지원형				

○ **컨설팅 지원 : 전문·사후컨설팅** (선정·완료 기업 의무 지원, 전액 무료)

구분	지원 대상 및 내용		
전문컨설팅	 (대상) '유형1' 및 '유형2' 선정기업 (내용) 과제 진행 중 컨설팅 지원 적정 스마트공장 구현, 과제 진행사항 점검, 공급사 계약관리, 납품검수, 구축과정 중 애로해결 지원 등 		
사후컨설팅 • (대상) '유형1' 및 '유형2' 완료기업 (2026년 예정)			
(차년도 지원)	• (내용) 구축 시스템 활용 점검 및 안정화, 고도화 구축 계획수립 지원 등		

□ 공통 지원조건

- (신청접수)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신청 가능
 - 구축장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 모든 설비 및 솔루션은 구축장 내에 구축하여야 함
 - 각 기업은 '유형1', '유형2-1', '유형2-2' 중 한 개 유형만 신청가능
 - 도입기업의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책정 가능하며, 전액 현물로 반영해야 함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동일 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 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단, 지원 내용이 다를 경우 신청 가능)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지원대상 제외', '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교육이수) 본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가 주관하는 "디지털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 각 1개 과정 이상
 - ※ 교육 세부내용은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2.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유의사항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설명회, 온라인 교육(2~3월)		② 신청·접수 (2~4월)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4월)		④ 대면평가, 과제선정(4월)
경기TP	\Rightarrow	도입·공급기업 (도입기업이 신청)	\Rightarrow	경기TP, 평가위원회 ※ '유형2' 신청기업은 법위반 사실 조회	\Rightarrow	경기TP, 평가위원회
						$\hat{\mathbb{T}}$
⑧ 전문컨설팅 진행		⑦ 사업진행		⑥ 협약체결 및		⑤ 현장확인,
(5~11월)	1	(5~11월)		사업착수(5월)	4	원가감리(4월)
도입·공급기업,	\Diamond	도입·공급기업,		(사업계획서 수정)	Ţ	경기TP,
전문컨설팅기관		전문컨설팅기관		경기TP-선정기업		원가감리기관
Û			1			
⑨ 전담인력 교육		⑩ 중간점검]	① 최종점검 및		⑩ 최종완료 및
(5~11월)	7	(7~9월)		완료평가(11월)	1	정산(12월)
경기TP,	\Rightarrow	경기TP,			>	경기TP,
도입·공급기업		도입·공급기업		평가위원회		도입·공급기업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순회 사업설명회 안내

- (행사명) 중소제조기업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 및 지원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5년 3월 4~7일, 14:00~16:00

일시	장소	주소
3월 4일(화)	경기테크노파크 3동 1층 다목적실	안산시 해안로 705
3월 5일(수)	화성시민대학 4층 계단강의실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12
3월 6일(목)	파주문화재단 소공연장	파주시 시민회관길 33
3월 7일(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남양주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46

- (주요내용) 스마트공장 '기초' 단계 구축 전략, 중소기업 구축 사례,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 안내 등
- (신청링크) https://onoffmix.com/event/317529

□ 온라인 교육 안내

- (교육명)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의 이해와 구축 준비
- (일시) '25년 3월 11일, 13:10~17:40
- (주요내용) 스마트공장의 개념과 구축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등
- (신청링크) https://ssup.kosmes.or.kr/apply/lrn/102294

□ **평가방식**: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신청과제가 지원목표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는 생략함

□ 평가기준

○ 서면평가

구 분	항 목	배점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및 목적	10
구축 필요성 및 목적(30)	- 스마트공장 장기적 비전 및 구축 의지*	20
구축 방향,	- 스마트공장 구축 방향	15
단계적 구축 계획(30)	- 구축 방향에 따른 단계적 구축 계획	15
금회 구축 세부계획	- 구축 희망 내용의 체계성	15
(30)	- 구축 기간, 참여인력, 사업비의 적정성	15
사업의 파급효과	-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현장 개선 효과	5
(10)	- 제조경쟁력 향상 효과(품질, 생산 납기 등)	5
합 계		

○ 발표평가

구 분	항 목	배점
	- 기업의 안정성 : 종업원 수, 매출액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가?	10
기업 역량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40)	- 스마트공장 <u>구축 의지</u>* : 도입기업의 자부담 비율, 교육 수료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가 강한가?	20
	- 공급기업의 전문성 : 공급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10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10)	- 예산 적정성 : 구축하려는 솔루션과 도입 설비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가?	10
	- 데이터 수집 계획의 명확성 : 도입기업의 제조공정을 분석하여, 각 공정별 수집해야 할 데이터 종류와 수집 방법(자동, 반자동, 수 동)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15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40)	- 솔루션 기능의 적합성 : 도입하려는 솔루션이 기업의 업종과 스마 트공장 목표 수준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15
	- 투입 인력의 적정성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을 적절히 분배하였는 가?	10
사업의 파급효과	- 현장 개선 효과 :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작업 환경 및 운영 방 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가?	5
(10)	- 제조 경쟁력 강화 효과 : 품질 향상, 생산성 증가, 납기 단축 등 스마트공장 도입이 제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5
	합 계	100

^{*} 순회 사업설명회(3.4~7.) 및 온라인 교육(3.11.) 참가기업은 <u>'구축 의지' 반영</u> 예정

□ 가점 및 감점, 협약 대상 제외 기준

○ (가점) 신청기업이 아래 항목 해당 시, 최대 5점 적용

항목	가점
∘ 5인 이하 기업	3
• 여성기업	3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3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기업	1

- (감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11개*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 총점에서 20% 감점 적용 ('유형2' 신청기업에 한함)
- *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노동) **④** 근로기준법,
 - ⑤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⑥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사업자 선정 후 확약서와 달리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과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취소 · 보조금 반환,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협약 대상 제외) 현장 확인 결과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합' 으로 확인될 경우, 협약 대상에서 제외

	확인여부	
	∘ 제조공장의 정상 운영 여부 (휴업 또는 폐업 여부 확인)	적/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사업계획서와 현장 공정·설비의 일치 여부	적/부
게노력단	· 기존 보유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적/부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
- 특정 유형의 적격기업 수가 부족한 경우, 해당 유형의 지원예산을 타 유형으로 전환 지원 가능하며, 지원예산 추가확보 시 별도 공고 없이 본 공고를 통해 접수한 기업 중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추가지원 가능
- 광주, 양주, 연천 소재 기업 중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붙임1, 별지8] 수요조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유형1' 지원이 확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지원기업은 과제 완료 후, 수혜 내용, 성과 및 효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경기TP가 실시하는 각종 만족도, 성과조사, 우수 지원사례 홍 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공고일 ~ 4월 3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각 유형에 맞는 신청서식('붙임1~3')을 작성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 ('붙임'의 [별지1]) 사업신청서 1부
	■ ('붙임'의 [별지2]) 사업계획서 1부
	■ ('붙임'의 [별지3]) 사업비 산출내역서 ('유형2-2'는 필요시 제출)
	■ ('붙임'의 [별지4]) 도입·공급기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및 개인정보 동의서
(유형1,2)	■ ('붙임'의 [별지5]) 참여 확약서
필수	■ 도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도입·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납세증명서: 홈택스-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민원출력
(유형2)	• ('붙임2'의 [별지6]) 도입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형2)
필수	• ('붙임2'의 [별지7]) 도입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유형2)
	■ ('붙임1'의 [별지8]) 기업 수요조사서 (유형1, 광주, 양주, 연천)
	■ 로봇자동화시스템 상세사양서 (유형2-2, 자유양식)
	■ 노후로봇 증빙자료 로봇 (구매증빙, 감가상각신고서, 제조일자 확인 가능한 사진 등,
(으혀1 2)	유형2-2, 노후로봇 교체지원시)
(유형1,2) 해당시	■ 도입 기업의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u>http://total.kcomwel.or.kr</u>)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u>https://www.4insure.or.kr)</u> 에서 발급
	■ 우대가점 증빙서류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공문, 여성기업 확인서)

□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s://pms.gtp.or.kr)
 - 홈페이지(www.gtp.or.kr) '사업공고'의 해당 공고문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645, 3651, 3658, <u>kmiso@gtp.or.kr</u>
- 붙임 1.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유형1' 신청 서식 각 1부.
 - 2.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유형2-1' 신청 서식 각 1부
 - 3.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유형2-2' 신청 서식 각 1부. 끝.